

청주지방법원 2024. 1. 26 선고 2022가단63747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

변론종결 2024.1.12.

판결선고 2024.1.26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미국에 위치한 사찰인 D사의 리모델링 및 불상설치 계약(이하 위 계약을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총 40만 달러에 체결하였고, 그 50%를 계약금으로 지급해달라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2억 원을, D사의 스님인 E이 1,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.

피고들은 이처럼 총 공사대금의 50%를 지급받았고 원고의 거듭된 독촉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바,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

기존에 교회로 이용되던 건물의 내부를 사찰로 리모델링한 후 전면에 불상 3개(전면에 천수보살,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)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계약은 2017. 6.경 'D사(대표자 F선사)'와 피고 C 사이에 구두로 체결되었는바,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D사를 위해 2억 원을 현금한 것에 불과하며, 피고 B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.

나아가 총 공사대금 미화 40만 달러 중 절반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상황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해 2억 8천만 원 가량을 들여 대한민국 및 중국에서 불상 및 법당 구조물 제작을 완성하는 등 현재 80% 이상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, 미국으로의 운송 및 현장설치만 남은 상황이다. 그런데 2022. 5. 7.경 D사의 담당자 등이 기존의 약정과 달리 “완공 후 2년 안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”고 밝히기에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피고 C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.

2. 판단

가.살피건대,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9. 7. 1. 1억 5천만 원, 2020. 3. 11. 5천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(이하 편의상 '이 사건 금원'이라 한다),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이 각 인정되나,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거나 피고 C 등이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.오히려 을 제1 내지 13, 15,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'D사'로 보이고,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은 2019. 7. 10.경 중국에 있는 전문업체(G회사 H)와 사이에 미화 128,600달러에 불상 3개 및 벌상사자 4개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미화 84,500달러를 지급하여 현재 위 업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되었으며,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설치물에 대해서도 2019. 12. 21. I와 사이에 162,900,000원에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121,400,000원을 지급하여 위 설치물의 제작 역시 완성되어 설치만 남은 상태이고, 2020. 3. 6. J에게 단청 채색작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9,600,000원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해가고 있었으나, 원래 약정과 달리 D사 측의 잔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지며 피고 C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정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, 계약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피고 측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.

3.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 사 김